간호과학연구소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이 연구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설 간호과학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소재) 본 연구소는 부산가톨릭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내에 둔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외부에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인 진리탐구, 사랑의 실천, 봉사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호학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및 학술, 간호전공자 및 관련자를 위한 계속교육,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사업을 함으로써 간호학문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 및 학술사업
   가. 논문집 발간
   나.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
2. 교육사업
   가.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
   나. 교회간호사 교육
   다. 교사를 위한 연수 ; 상담 프로그램 운영
3. 대외사업
   가. 노인보건복지 사업
   나. 청소년 정신건강사업
   다. 교회간호사업
   라. 대체・보완요법사업
4. 이상의 각 호에서 제시한 사업 외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호전문인력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
제5조 (연구위원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이 되려는 자는 연구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특별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국내・외 인사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 직

제6조 (임원 등)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1명
2. 간사 1명

② 본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 (임명과 임기) ① 본 연구소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.

제8조 (임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한다.

제9조 (조직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 및 학술부, 교육사업부, 대외사업부를 두며 그 조직은 별표와 같다

② 연구 및 학술부는 간호과학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구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.

③ 교육사업부는 간호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.

④ 대외사업부는 노인보건복지센타, 청소년 정신건강센타, 교회간호 사업소 및 대체·보완요법사업소를 설립·운영하며 이에 관련한 정보교환, 기술자문, 각종 자료 간행 및 관.산.학 협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10조 (연구위원회) ① 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소장과 연구위원으로 한다.

②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연구위원회의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④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
2. 예산과 결산
3. 규정류의 개폐
4.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소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, 간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⑥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규정의 개정안
2.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
3. 사업 보고안과 결산안
4. 업적 분석 및 평가
5. 연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 (회의록) 연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이상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결과보고) 소장은 연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4조 (재정)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교비 보조금과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15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 5 장 보 칙

제16조 (규정의 준용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은 본 대학교의 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 (기타사항)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